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

의안 번호	52
----------	----

제출연월일 : 2006년 11월 13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이유

-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충청북도의 발전에 관하여 충청북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개발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할 환경분야의 주요사업계획 및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기타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충청북도의 발전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의 해결 자문기능 수행 (안 제3조)
- 위원은 20명(공무원 4명, 민간전문가 16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 함.(안 제4조)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함.(안 제5조)
-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와 위원과반수의 요구가 있을때 소집하며, 재적위원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안 제7조)
-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안 제8조)
- 위원회는 업무수행상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10조)

3. 의안전문 : 별첨

4. 관계법령 : 별첨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충청북도의 발전에 관하여 충청북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지속가능발전”이라 함은 쾌적한 환경속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능) 충청북도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개발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할 환경분야의 주요사업계획 및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2. 기타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충청북도의 발전과 이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의 해결과 관련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자문을 구하는 사항

제4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당연직 위원은 도소속 공무원으로 경제통상국장·복지환경국장·농정국장·건설교통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민간인, 기업인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심의 안건 및 처리) ①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위원장은 심의결과를 해당부서에 통보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환경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②간사는 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안의 검토결과 등에 대해 보고할 수 있다.

③서기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10조 (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위원회는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발 취

□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5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 제18조(대통령령 제19563호)

제18조(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역 실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